

[별지 제1호 서식] (공소제기 후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박세현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보도자료

2019. 12. 31.(화)

제 목

국회의원 B 등 불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※ 위 양식에 따라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공개의 요건과 범위 기재(제15조 제4항)

※ 해당 부분에 표기, 해당사항 없는 부분()은 내용 삭제

[별지 제1호 서식] (공소제기 후)

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2019. 12. 31.(화) A 및 B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
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(A, 前 공무원) 공무상비밀누설
2. (B, 국회의원) 외교상기밀탐지·수집·누설

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(A) 공무상비밀누설

- 2019. 5. 9.경 미국 워싱턴 디씨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B와 통화 중, B의 요청에 따라 외교상기밀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누설

2. (B) 외교상기밀탐지·수집·누설

- 2019. 5. 9.경 서울에서 A로부터 위와같은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탐지·수집
- 2019. 5. 9.경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발표,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누설